

5.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및 세율인상

1) 배 경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높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세로 부담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서 특별·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교육세 세율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5년간('00~'04)총 34.3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중 6.4조원(연 1.6조원)을 교육세 증세를 통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모든 지방교육세⁷⁾의 세율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재산세·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1천만명을 넘는 대중세인 점을 감안하여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배소비의 사회적 해악이나 경륜·경마의 사행성 등을 감안하여 경주·마권세 및 담배소비세에 한하여 각각 10%씩 세율을 인상 조정하게 된 것이다.

지방교육세의 신설에 따라 2001년 지방교육세 세수추계는 34,780억원으로 2000년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예산규모 29,695억원보다 5,085억원(17%증)이 증가하게 되나, 지방교육세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한 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게 되므로 실제적인 지방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2) 개정개요

현행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등록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종합

7) 교육부에서는 향후 5년간('00~'04)총 34.3조원을 투자하고, 이중 6.4조원(연 1.6조원)은 교육세 등 조세부담 인상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모든 교육세의 세율인상을 요청하였다.

- 경주·마권세분 50 → 80%, 재산세분 20 → 40%, 종합토지세분 20 → 40%, 담배소비세분 40 → 60%